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

### 2020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

공제 확대	월세 세액공제 대상	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→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
	고액 기부금 기준	기부액 2000만원 초과 → 1000만원 초과
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	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→ 5억원 이하
새로 생긴 공제	산후조리원 비용	출산 1회당 2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
	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	신용카드 소득공제(공제율 30%)
공제 축소	면세점 신용카드 결제액	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제액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
	자녀세액공제 대상	20세 이하 모든 자녀 → 7세 이상 자녀
	의료비 세액공제 범위	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
헛갈리는 항목	인적공제	연소득 100만원 이상 가족 제외 맞벌이 부부는 자녀·부모 중복 공제 주의
	월세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구원 중 주택 소유자 있으면 공제 불가</li> <li>•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계약자일 때만 가능</li> </ul>
	부모 의료비	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자녀만 세액공제 가능
	자녀 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어린이집 입소료, 현장학습비, 차량운행비 제외</li> <li>•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</li> </ul>
	신용카드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새 차 구입비는 불가, 중고차 구입비는 10% 공제</li> <li>• 보장성 보험료, 기부금은 중복공제 불가</li> </ul>



## 관세청 납세도움정보 활용 혜택

구분	납세도움정보 활용(납세진단)	납세도움정보 활용 과정에서 세관확인을 받은 경우
대상	모든 수입기업	중소·중견기업 (수입금액 300억원 이하)
오류 치유 방법	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 치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,</li> <li>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 세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</li> </ul>
세관의 검토·확인	없음	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이 납세오류 치유 사실 확인 (원칙 : 서면확인, 예외 : 방문)
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치유된 납세신고 건에 대해,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</li> <li>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</li> <li>납기연장, 분할납부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치유된 납세신고 건의 납세신고 세부 항목(예 : 운임, 로얄티 등)에 대해,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세조사 제외</li> <li>세액심사 면제</li> <li>가산세 면제(해당 항목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발생시)</li> <li>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</li> <li>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</li> <li>납기연장, 분할납부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



## 연금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납입액에 따른 절세효과

연금계좌 불입액	IRP불입액	공제대상금액	절세효과(지방소득세 포함)	
			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(공제율 우대자) 세액공제율 16.5%	총급여 1억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세액공제율 13.2%
400만	0	400만	66만	52만8000
700만	0	400만	66만	52만8000
500만	200만	600만	99만	79만2000
400만	300만	700만	115만5000	92만4000
200만	500만	700만	115만5000	92만4000
0	700만	700만	115만5000	92만4000